

## 질문

### 접수번호

118046

### 이름

이\*훈

### 상담분류

기타

### 제목

📍 조사 없이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 공문을 발송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

### 공개여부

공개

### 개인정보동의

동의

### 조회수

109

### 작성일

2025-07-10

### 첨부파일

### 내용

○ 감사위원회에 주택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사실관계 요약) 세종시 도램마을 14단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15일경, 주택과로부터 「도램마을14단지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라는 제목의 붙임문서를 포함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공문은

가. 세종시는 입대이에 처분한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며,  
나. 입대이는 2020년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절차를 위반하였으며  
다. 입대이는 2020년 옥상방수공사 관련하여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는데,  
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9일 17시경,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결과, 해당 '직권조사'에 따른 현장 방문,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실질적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과거 보유 중인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만으로 '조사 결과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담당자의 확인 사항을 제시된 위반사항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절차 위반은, 보유중인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인데, "직권조사 없이 부실하게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도램14단지 입대이는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은, "도램14단지 직권조사 (최종)결과 통보 및 공개의무 알림 (23.10.5.)"을 근거했다는 것인데, 해당 직권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즉, "2년 전 직권조사"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직권조사 없이 이 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또한, 2년 전 직권조사는 "대리할 권한이 없는 전 입대의 회장의 소명(성능 좋은 물탈을 사용하려는 의도)"을 과태료 감경에 반영함으로써 조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직권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주택과는 무권대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는 조사기관이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명령, 현장 검사 등 적극적인 조사행위를 수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주택과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이에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 및 확인 후,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1월 발송된 공문의 근거가 된 '조사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실질적 조사 없이 '처분성' 공문을 발송하게 된 행정적 배경과 결정 과정
  3. 해당 과태료 통보의 절차상 하자 여부
-

